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50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송석준·김미애·성일종

이헌승 • 유상범 • 이종배

김예지 • 박충권 • 김선교

엄태영 • 곽규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(절대농지)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.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, 농기계, 농약,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,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.

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,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향상을 저해하는 워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 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,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9의2. 농기자재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	제32조(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
한)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	한) ①
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	
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	
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. 다	
만,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9의2. 농기자재를 판매하는 데
	필요한 시설의 설치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